

# 구미상공회의소

우 39277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0

전화 054-454-6601(교2002) / jungkm1@korcham.net / 경영관리팀 / 정경민 과장

경영관리 : 제375호

2026.04.22

수 신 : 회원사 대표

참 조 :

제 목 : 제17대 상공의원 선거 관련 안내

1.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본 회의소에서는 2027년 상반기에 제17대 상공의원 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 선거와 관련해 회원사에서 미리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주요내용은 구미상공회의소 정관과 선거규정에 명시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이며
4. 특히, 상공의원 피선거권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3년 간(2024~2026년) 납부된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의 합산액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까지 600만원 이상 되어야 하므로 이 점 반드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유 첨 : 구미상공회의소 선거관련 정관 및 규정 1부 끝.

구미상공회의소 회 장 윤 재



# [구미상공회의소 선거관련 정관 및 규정]

## 1. 선거권 및 피선거권 관련 구미상의 정관

### ○ 일반의원

#### - 제13조(선거권)

- ① 회원은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기의 직전 2개기의 회비 납부액에 따라 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. 다만 회원 1인이 가지는 선거권은 35개를 초과할 수 없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의원 선거일이 속하는 기의 직전 기(전년도 12월 31일)까지 선거권과 관련하여 추가로 회비를 낸 경우에는 이를 3의 숫자로 안분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회비 납부액에 합산한다.
- ③ 회원이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기의 직전 6개기(2024년 1기~2026년 2기)에 낸 특별회비는 3의 숫자로 안분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회비 납부액에 합산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이를 분할하여 행사할 수 있다.

#### - 제14조(피선거권)

- ① 회원은 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. 다만, 회원이 의원의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임의회원과 당연회원은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기의 직전 6개기(2024년 1기~2026년 2기)에 납부한 회비와 의원 선거일이 속하는 기의 직전 기(전년도 12월31일)까지 납부한 특별회비를 합산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 일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.

### ○ 특별의원

#### - 제19조(선거권)

특별회원은 정관 제20조에 따른 직군별로 1개의 동일 직군별 특별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.

## - 제20조(피선거권)

- ① 특별회원은 다음 각호의 직군별로 한 개의 특별의원피선거권을 가진다.
  - 1. 농업협동조합, 축산업협동조합 및 비영리 금융기관
  - 2. 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
  - 3. 공단협의회(지역별)
  - 4. 여성기업단체
  - 5. 중소기업단체 및 기타경제단체
- ② 특별의원 선거일이 속하는 기의 직전 6개기(2024년 1기~2026년 2기)에 납부한 회비와 특별의원 선거일이 속하는 기의 직전기(전년도 12월31일)까지 납부한 특별회비를 합산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 일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.

## 2. 선거권 및 피선거권 관련 구미상의 선거규정

### - 제9조(선거권)

- ① 회원은 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.
- ② 특별회원은 정관 제20조에 따라 동일 직군별로 1개의 동일직군 특별의원 선거권을 가진다.

### - 제10조(선거권의 정지)

- 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 및 특별회원이 선거일 이전 3년(2024년 1기~2026년 2기)의 기간 동안 1회라도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권이 정지된다. 다만, 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 전일까지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임의회원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선거공고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.

### - 제11조(피선거권)

- ① 회원은 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.
- ② 특별회원은 다음 각호의 직군별로 한 개의 특별의원 피선거권을 가진다.
  - 1. 농업협동조합, 축산업협동조합 및 비영리 금융기관
  - 2. 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
  - 3. 공단협의회(지역별)

- 4. 여성기업단체
- 5. 중소기업단체 및 기타경제단체
- ③ 특별회원의 동일 직군별로 특별의원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 직군별 입후보자끼리 선거를 실시한다. 단 득표수가 동일한 다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
#### - 제12조(피선거권의 제한 등)

-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 및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.
  - 1. 선거권이 없는 자
  - 2. 피성년후견인
  - 3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- 4.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
  - 5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 2년 미만 자
  - 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- 7. 의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 미만 자
- ② 회원 및 특별회원이 선거일 이전 3년의 기간(2024년 1기~2026년 2기) 동안 1회라도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정지된다. 다만, 후보자등록개시일 전일까지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임의와 당연회원 및 특별회원이 선거일이 속하는 기의 직전 6개기(2024년 1기~2026년 2기)에 납부한 회비 및 특별회비를 합산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정지된다. 단, 후보자 등록 개시일 전일까지 납부한 일반회비와 선거일이 속하는 기의 직전기(전년도 12월31일)까지 납부한 특별회비를 합산한 금액이 6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피선거권이 부여된다.
- ④ 임의회원의 경우 가입일부터 선거공고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.